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1. 19 선고 2019가단3667(본소), 2020가단133373(반소)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 · 부당이득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종만

피고(반소원고)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정

변론 종결2020. 10. 15.

판결 선고2020. 11. 19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56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3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1. 본소

주문 제1항과 같다.

2. 반소

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는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에게 50,290,000원 및 그 중 31,730,000원에 대하여 2016. 4. 23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50,290,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C은 D에게 양주시 E 임야 3,372㎡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'라 한다) 중 1/6 지분(이하 '이 사건 지분'이라 한다)을 명의신탁 하였고, D은 1986. 11. 3.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원고는 1996. 10. 11. 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다.

다. D은 2011. 12. 18. 사망하였고, 이에 그 상속인인 피고가 2012. 1. 12.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. 12. 18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C은 2019. 2. 28.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, 2019. 3. 13.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, 그 통지는 2019. 3. 14. 피고에게 도달하였다.

마. 이후 C은 2020. 6. 12.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1996. 10. 11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바. 피고는 2016. 4. 12.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7141호로 임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4. 20.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. 이에 피고가

항소하였는데, 그 항소심(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5173)은 2018. 9. 7. D 등이 F과 사이에 양주시 G 답 1,063m²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 한다)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한 임대차계약 및 임료 수금업무를 F에게 위임하고, F은 수금한 임료 중 매월 150,000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1/8로 나누어 D에게 분배하고, D이 사망한 이후에는 D이 지급받던 분배금을 그 승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, D이 사망하자 위 위임계약을 피고가 승계하였거나 또는 F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취지로 묵시적인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, F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임료분배금(2010. 8.부터 2016. 3.까지) 31,73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6. 4. 2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(이하 '이 사건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하였다. 위 판결에 대한 F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9. 1. 29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 근거] 갑 제1, 2, 6, 7호증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피고가 2009. 10.부터 2019. 2.까지(113개월)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임료로 취득한 56,500,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6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. 3. 2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본소 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원인

피고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료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. 그런데 F은 원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2010. 8. 27.부터 2018. 12. 31.까지의 임료 50,290,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왔다.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F으로부터 임료 50,290,000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임료분배청구권을 침해하여 피고에게 50,290,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.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

50,290,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.

나. 판단

가사 F이 임료분배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변제해야 될 50,290,000원을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, 이는 채권자 아닌 자에 대한 변제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. 예외적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선의, 무과실로 변제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어 본래 채무가 소멸될 수 있으나(민법 제470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원고에 대한 위 50,290,000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하여 선의, 무과실로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F의 원고에 대한 위 50,290,000원의 변제로 인해 피고가 F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 채권을 포함한 임료분배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, 피고는 여전히 F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채권을 포함한 임료분배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에게 위 50,290,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F의 원고에 대한 위 50,290,000원의 지급으로 인해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(피고는,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로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다8862 판결 및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99다53230 판결을 들고 있으나, 첫 번째 판결은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, 두 번째 판결은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에 관한 것으로,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, 이 사건에서 위 각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.)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병훈